'27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희망건축물 신청 안내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 개요

○ (목적) '27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자체 및 중앙·공공기관의 계획수립 및 의사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사업 공모 전 희망건축물 접수**

○ (신청기간) '26. 11. 6.(금) ~ '26. 12. 11.(금)

○ (신청기관)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5호에 따른 "공공건축물" 중 '27년 지원대상에 만족하는 건축물을 **소유 및 관리*** 중인 기관(이하"사업대상기관")

* 국가에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에서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희망건축물 신청 시 사업대상기관 관리 증빙자료 제출 必)

○ (지원대상) 공공건축물 중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한 **[첨부1]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사용승인일 2017년 1월 1일 이전)

○ (사업유형) **❶종합형**, **❷맞춤형**, **❸군집형** 사업

※ 희망건축물 신청 시 사업유형별 동시 지원 가능하나, 본 사업 신청 시에는 지원 조건에 따라 유형별 별도 선정 예정

- (**종합형**) 그린리모델링이 필요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에너지성능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이는 지원 사업

- (**맞춤형**) 건물이력, 기후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린리모델링 요소 중 일부 적용만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이는 지원 사업

- (**군집형**)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노후 건축물을 군집단위로 묶어서 종합형과 맞춤형 그린리모델링을 동시에 지원하는 사업

* 종합형, 맞춤형, 군집형은 사업비 지원한도가 상이할 수 있으며, 사업조건은 본 사업 공모 시 상세 확인 요망

□ 신청 방법

① (시스템 접속) 사업대상기관에서는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공건축물 관리시스템'**을 **선택** 후 **로그인**

* 기존 회원 :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 신규회원 : 회원가입 필요

② (희망건축물 등록) 사업대상기관에서는 2027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희망건축물 대상**을 **건물별로 등록**

- (**사업개요 입력**) 지역, 사업유형, 광역·기초·건물 담당자정보 입력
- (**건물정보 입력**) 건축물명, 지원용도, 주소, 건축물대장 정보, 추경예정일, 도서 구비현황, 소유구분 등 **각 항목 전체 입력**

구분	주용도군	세부용도		구분	주용도군	세부용도	
1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18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2		박물관		19			정신보건시설
3	교육연구시설	도서관		20			노숙인복지시설
4		유치원		21			사회복지관
5		직업훈련소		22			자활센터
6		평생교육시설		23			성매매피해지원시설
7	수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24			성폭력피해보호시설
8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	어린이집	25			가정폭력보호시설
9			아동복지시설	2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27			다문화가족복지시설
11			노인의료복지시설	28			건강가정지원센터
12			노인여가복지시설	29			청소년복지시설
13			재가노인복지시설	30			북한이탈주민지원시설
14			노인보호전문기관	31		근로복지시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15			노인일자리지원기관	32	관광휴게시설	어린이회관	
16			학대노인피해노인전용쉼터	33	기타공공시설	보건소	
17			복합노인복지시설	34		주민공동시설	

※ (중요) 해당 용도의 세부기준은 [첨부1]의 법적 근거에서 확인할 것

※ 일부 용도에 한하여 연면적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③ (증빙서류 제출) **사업대상기관**이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의 경우, **관리**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별도 첨부 필요(붙임2 양식 업로드)

□ 안내 및 협조 사항

○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지원받은 건축물은 중복 지원 불가하나, 중복건축물지원 조건*에 따라 지원 가능

* ❶ 군집건축물 중 건축물 대장에서 별도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❷ 복합건축물로서 지원받지 않은 부위 중 지원대상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 ‘21~’26년 사전조사 및 컨설팅 완료된 희망 건축물 중 미선정된 건축물도 ‘27년 희망건축물 신청해야 지원 가능

○ 희망건축물 신청 물량이 많은 경우, 현장조사 및 컨설팅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향후 현장조사 및 컨설팅 실시 할 경우, 사업대상기관은 적극적인 업무협조 및 관련자료(이주계획 및 지방비 확보계획, 도면 등)를 종합사업관리 업체에 적기 제공하여야 함

※ 금번 희망건축물 신청은 ’27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사전조사’를 위한 것이며, 사업지원 내용 등은 본 사업 공모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일정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27. 1월~4월 : 희망건축물 대상 사전조사(현장조사 및 컨설팅) 시행

○ ’27. 4월 : 본 사업대상 공모(별도 공지)

○ ’27. 5월 : 사업대상 선정

○ ’27. 6월 : 사업비(국비) 1차 교부*

* 사업추진 현황에 따라 2차 교부

○ ’27. 8월 : 사업추진(설계 및 시공)

□ 문의처

○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권역별 담당 연락처)

지역	연락처	
수도권역 (서울·경기·인천·제주)	055-771-4855	-
강원권역 (강원)	055-771-4750	044-960-6206, 6208
충청권역 (대전·세종·충북·충남)	055-771-4925	044-960-6210
전라권역 (광주·전북·전남)	055-771-4971, 4847	-
경상권역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055-771-4987, 4822	-

첨부 | **'27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용도**

① 문화 및 집회시설 ** 단 건물 동별 연면적 3,000㎡ 이상 지원불가*

- (**전시장**)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가목에 따른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등) 및 제5호제라목에 따른 **전시장**(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 (**박물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② 교육연구시설

- (**도서관**)「도서관법」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도서관·공립도서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특수도서관**
 ** 단 건물 동별 연면적 3,000㎡ 이상 지원불가*

- (**유치원**)「유아교육법」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유치원·공립유치원**

- (**직업훈련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

-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제30조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5조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6조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7조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8조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③ 수련시설 ** 단 건물 동별 연면적 3,000㎡ 이상 지원불가*

-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및 제2호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④ 노유자시설

④-1 아동관련시설

-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공동생활가정·자립지원시설·아동상담소·아동전용시설·지역아동센터·협동돌봄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보장원·자립지원전담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④-2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보인지원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복지용구지원서비스)

-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 (**학대노인피해노인전용쉼터**)「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복합노인복지시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복합노인복지시설**

④-3 사회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제59조의1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6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정신보건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 (**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상담소**,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다문화가족복지시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북한이탈주민지원시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④-4 근로복지시설

- (**근로자종합복지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⑤ 관광휴게시설

- (**어린이회관**)「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7호제다목에 따른 **어린이회관**

⑥ 기타공공시설

- (**보건소**)「지역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
- (**주민공동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제사목에 따른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 '27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계획 확정 이후 변동가능